

	<b>산학협력교육위원회 운영규칙</b>		규정번호	5-0-27	
			제정일자	2017. 11. 10	
			개정일자		
			개정번호	ver .0	총페이지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교육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산학협력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교육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교육 교과 편성 원칙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교육 교과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산학협력교육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처장, 교무부처장, 기획부처장, 각 학부장, 종합정보지원실장, NCS교육운영지원센터장,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장, 기술창업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이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**제4조(회의 및 의결)** ①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5조(보고)**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6조(세부 운영사항)** 이 규칙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